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

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관 일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림

□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정관) ②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□ 정관 현황

○ 정관명칭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

○ 구 성 : 총 7장 39개조 및 부칙

□ 정관 개정사항

○ 당연직 임원 변경

- 「서울기술연구원 지도·감독 업무 조정 계획」(서울시 시정연구담당관-22349, 2022.06.17.)에 따라 당연직 임원 변경
 - '22.7.1.자로 서울시 지도·감독부서가 안전총괄실에서 시정연구담당관으로 변경
 - 당연직 임원 변경 내역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		
당연직 이사	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	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<u>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</u>			
당연직 감사	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장	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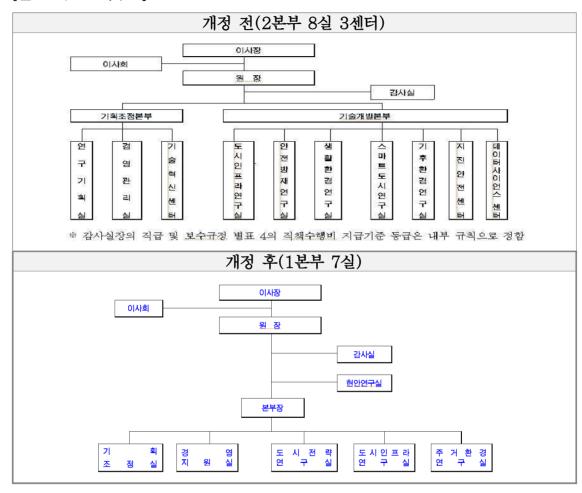
- 이사회 의결 : 제19차 임시이사회(2022. 9 .27.)에서 원안 가결

○ 기구표 변경

- 「직제 및 정원 규정」의 [별표 제2호]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구표를 「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」에 반영

- 연구원 인적자원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슬림화된 조직으로 개편
 - · 전체 조직은 대과(大科) 중심으로 크게 구성하고, 연구조직은 매트릭스에 준하는 조직으로 연구분야와 방법이 융합되는 기술중심 조직으로 개편
 - 업무중복 발생 부서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

[별표 제2호 기구표]



- 이사회 의결 : 제20차 임시이사회(2022, 12 .2.)에서 원안 가결

□ 향후 계획

- 시의회 보고 및 서울시 승인 요청
- 서울시장 승인 후 정관 효력 발생
- 붙임 1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 - 2.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전문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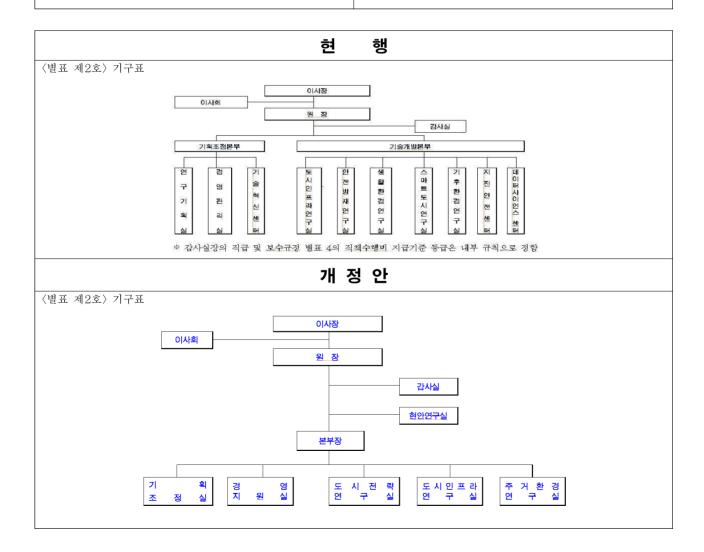
붙임 1. 신구조문 대비표

행 혅

- **제6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제8조의 **제6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제8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원장, 이사장, 선임직 이사·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. 조례 또 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 -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
 - 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
 - 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.

개 정 안

-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원장, 이사장, 선임직 이사·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. 조례 또 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 -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
 - 2.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
 - 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.



붙임 2.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전문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

제정 2018.03.27. 개정 2018.06.19. 개정 2019.03.08. 개정 2019.09.06. 개정 2022.03.30. 개정 2022.00.00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민법」 및「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 관련 각종 기술,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를 진행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(약칭 SIT)로 표기한다.
- 제3조(소재지)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(상암동, DMC산학협력연구센터)에 둔다.
- 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 된 사업을 한다. [2019.9.6. 개정]
 - 1.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
 - 2.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
 - 3.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
 - 4.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
 - 5. 스마트도시 조성 · 관리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
 - 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
 - 7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ㆍ평가ㆍ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 - 8. 서울특별시, 국가ㆍ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
 - 9.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임원 및 직원

- 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
 - 1. 원장 1명
 - 2. 이사장 1명
 - 3. 이사 10명 이하(원장 및 이사장 포함)
 - 4. 감사 2명
 -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6조(임원의 임면) ① 임원은 제8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원장, 이사장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 -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[2019.3.8. 개정]
 - 2.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[2022.0.0. 개정]
 - 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. [2022.0.0. 개정]
- 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,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[2019.3.8. 개정]
 - ②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 -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- 제8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연구원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 - 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
 - 2. 서울특별시 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 - 3. 연구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 -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 - 1. 경영전문가
 - 2. 과학기술분야 전문가
 - 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 - 4. 공인회계사
 - 5.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- 6.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 -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
- **제9조(임원 후보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.
 -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연구원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직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[2019.6.19. 개정]
 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- ④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기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1조(직원의 임면) ①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.

-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- 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임·직원의 복무)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 연구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원장은 시장의,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- 제14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 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
 -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구원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 연구원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연구원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당연직 감사가 연구원을 대표한다.

- 제17조(대리인의 선임)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연구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
 -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[2022.03.30, 개정]
 - 3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[2022.03.30. 개정]
 -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[2022.03.30. 개정]
 - 5. 삭제 [2022.03.30. 개정]
 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 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- 제19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단,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인 임원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 - 1.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- 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- 3.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- 4.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 - 5.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3장 자산 및 회계

- 제20조(재산)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-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 -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- 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금전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 산 및 기타 재산권
 - 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 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- 제21조(재산의 관리)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연구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각,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제22조(운영재원)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사업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제23조(기금)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출연금
 - 2.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- 3. 기업, 금융기관, 민간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
 - 4.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
 - 5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
 - ③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④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- 제24조(사업연도 및 회계) ①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.
 - ② 연구원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, 예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사업계획과 예산)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 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.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- 제26조(결산)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완료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[2019.3.8. 개정], [2022.03.30. 개정]
- **제27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연구원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연구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 - ③ 연구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제4장 조직 및 정원

- 제28조(조직 및 정원) ① 연구원의 조직은 [별표 제2호], 정원은 [별표 제3호]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. [2022.03.30. 개정]
 - ②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소속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장 이 사 회

- 제29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.
 -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.
- 제30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연구원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 - 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 - 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- 7.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 - 8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 - 9. 연구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 - 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- 11.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1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 -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 -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 -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**제32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.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-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- 제33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이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34조(회의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6장 연구자문위원회

- 제35조(설치 및 운영)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 연구자문위원 회(이하 위원회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장 보 칙

- 제36조(정관의 변경)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7조(규정의 제정) ①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 - ② 직제 및 정원 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8조(해산)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.
- 제39조(공고방법) 연구원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연구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) [삭제 2018.6.19.]

- 제3조(사업연도) 연구원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구원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.
- 제4조(사업계획 등)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연구원 설립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5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 제6조의 당연직 임원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- **제6조(경과조치)** ① 연구원의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5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최초 원장 선임 시까지의 원장의 직무는 서울특별시 안전총 괄본부장이 대행한다.
 - ③제8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18.03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06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03.08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09.06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03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00.00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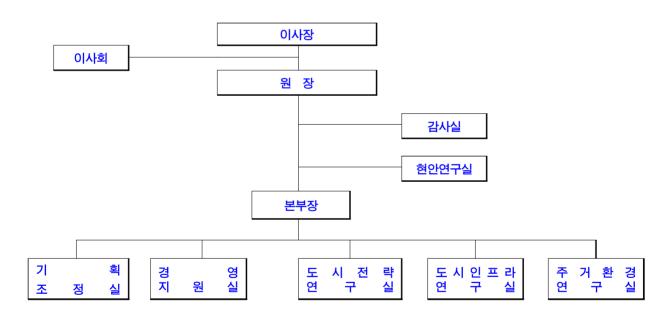
〈별표 제1호〉

기본재산 목록

구 분	출 연 자	금 액(원)	비고
계		500,000,000	
현금	서울특별시	500,000,000	설립출연

〈별표 제2호〉[2022.03.30. 신설][2022.00.00. 개정]

기구표



〈별표 제3호〉[2022.03.30. 신설]

정원표

구 분			연구직			일반직							
	- 계	계 원장	소계	선임 연구위원	연구 위원	수석 연구원	전임 연구원	소계	선임 위원급	위원급	수석급	전임급	관리 운영직
정 원	108	1	85	5	24	29	27	19	1	5	7	6	3